

### 반복되는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막을 '절대 반지'는?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1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조모(56)씨가 피해자를 해코지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되돌려보냈고, 이를 만에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신변보호 중이던 김씨는 당시 긴급 신고용 스마트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씨

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조씨는 15일 서울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응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선 수사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검찰도 법률의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경찰은 조씨가 김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보입니다. 검찰도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해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보완수사요청 역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협의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 이번 사건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4호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 유치'를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 사건이 스토킹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애당초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스토킹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하고 싶어도 경찰 판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 판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개월 동안 가해자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처분을 수사기관 판단만으로 할 수 없게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 살인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친 시간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려 간 시간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시간이 가해자 공격시간 보다 빨라야 합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법익이 균형을 이루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가해자 동의를 얻어 휴대폰에 위치 정보 앱을 설치해 수사기관이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위치정보 앱은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 반경 2km 혹은 3km 안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하고, 가해자가 위험 반경 범위를 벗어날 때 근접보호를 완화하면 됩니다. 혹시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꺼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동하고 난 뒤 가해자를 찾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만 ‘위치 파악’은 디지털 전자정보로 알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는 인력충원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국민 생명 보호보다 더 중요한 국가 의무는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분들도 꼭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사정책은 유도피아적 이상향을 그리는 학문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분야입니다. 피해자 생명보호에 있어 필요한 제1의 절대법칙은 바로 ‘가해자 공격보다 빠른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